

[재공고]

제 안 요 청 서

(기본사회 관점의 일자리 정책 추진방향 연구)

2026. 8

기 본 사 회 위 원 회
[정책기획과]

1. 과업 개요

- 과 제 명 : 기본사회 관점의 일자리 정책 추진방향 연구
- 소요예산 : 금 오천만원정(W50,00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과제기간 : 계약체결일로 부터 4개월 간
 - * 연구기간 및 용역비는 협상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 추진배경
 - 기본사회 관점에서 모든 국민이 사회에 참여하고, 존엄을 유지하며 삶의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일자리 정책 방향 연구 필요
 - 아울러, AI·디지털 전환(AX)과 탄소중립 전환(GX)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의 고용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자리 정책 검토 필요
- 업체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2. 과업 기본방향

- AI·디지털 전환 및 탄소중립 전환의 시대에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 구축과 연계하여 새로운 일자리 개념 정립
- 기본사회 관점의 일자리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국내외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기존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의 고용정책 현황을 파악하여 기본사회 일자리 개념에 따라 분류하고 재정립 방안 검토
- 기본사회의 주요 요소인 기본소득, 기본서비스 등과 연계하여 새로운 일자리 개념에 부합하는 일자리 정책 및 지원방안 마련

II

제안 요청 내용(과업내용/과업지시)

※ 연구기관은 아래 과업을 기본으로 하되, 착수보고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세부 연구방법·조사대상·산출물 형식을 확정한다.

○ 기본사회 관점의 일자리 개념 정립

- 모든 사람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 관점에서 필요한 일자리 개념에 대한 주요 요소들을 명확하게 도출
- 특히, AI·디지털 전환(AX)과 탄소중립 전환(GX) 등 대규모 산업 전환에 따라 기본사회 관점의 일자리 개념 필요

○ 국내외 기본사회 관점의 일자리 운영 사례 조사 분석

- 미국, EU 등 주요국의 기본사회 관점의 새로운 일자리 실험·정책 등에 대한 사례 조사 분석
- 기본사회 관점에서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국내 지방정부의 새로운 일자리 실험·정책 등에 대한 사례 조사 분석
- 국내외 사례 조사 분석을 통해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주요 성공 요소를 도출

○ 기존 고용 및 노동 정책과 기본사회 일자리 정책과의 관계 분석

-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의 기존 고용 및 노동 정책에 대한 기본사회 일자리 정책과의 비교 분석
- 비교 분석 결과에 따라 기본사회 일자리에 연계 가능한 고용 및 노동 정책에 대해 지속적 운영 방안 마련

○ 기본사회 관점의 일자리 정책 제안

- 기본소득 및 기본서비스 등 기본사회 요소들과 부합할 수 있는 일자리, 근로복지 및 근로기준, 산업안전 관련 정책을 도출
- 관련 부처에서 기본사회 관련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도출

III

제안서 평가 기준

- 제안서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기준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
- 기술 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되, 종합평가는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의 비중을 적용

<종합평가 기준표>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점
기술 능력 평가	과제 이해도 및 연구방향 적합성	○기본사회 관점의 일자리 개념 등 과업 이해도 ○연구 목표, 범위, 핵심 질문 설정의 명확성	20
	연구내용의 충실성	○기존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 고용정책 분석의 충실성 ○기본사회 관점의 새로운 일자리 정책 제시 가능성 ○기타 과업에 제시된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35
	연구방법의 타당성	○문헌, 법·제도, 통계 분석 등 연구방법의 적절성 ○국내외 사례 선정 기준과 비교·분석 틀의 타당성 ○전문가 자문, 관계자 의견수렴 등의 적정성	15
	수행체계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연구 책임자의 관련 분야 전문성 및 연구총괄 역량 ○참여 연구진 구성의 적정성 및 역할분담의 명확성 ○최근 유사 연구 수행실적 및 정책연구 수행 경험	15
	재무구조·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등 경영상태 평가(정량)	5
가격 평가	제안가격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10
합 계(총 100점 만점)			100

* 가격평가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의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에 따름

<기술능력평가(정성평가) 기준표>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기술능력평가(재무구조·경영상태) 기준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따름

-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정성평가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각 1개씩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정성평가 점수를 산출(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정량평가(재무구조·경영상태) 점수는 제출서류에 따라 산정

IV 협상 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 9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서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배점이 큰 항목의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연구내용의 충실성'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1순위 협상대상자와 연구 계획의 내용, 이행 일정, 등 제안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하고,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
- 협상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마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 연구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사회위원회 담당 부서와 사전협의하여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 연구수행은 연구과업을 지휘, 총괄하는 연구책임자를 중심으로 유기적이며 능률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본 사업 목적, 취지, 성격 등을 명확히 이해하고 기본사회위원회 정책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객관성 있는 산출내역을 제시하여야 한다.
- 경비는 사후정산을 원칙으로 하고, 정산금액은 계약상의 경비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기본사회위원회는 용역안에 대하여 심사권을 가지며,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본사회위원회와 수시 설명 및 협의를 하여야 하며, 심사 및 협의결과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시 제반 규정과 과업지시서상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문구 해석으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그래도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규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한다.
-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공된 자료는 성과물 또는 과업 수행 내용을 기본사회위원회와 사전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외부로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행정조치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과업수행자는 최종 용역보고서에 대한 시안은 완료일 7일 이전에 완성하여 기본사회위원회와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기본사회위원회에서 용역보고회 요구가 있을 시는 용역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VI 과업의 성과보고 및 제출

○ 착수보고

- 용역 수행자는 수요기관 요청시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추진 일정표, 과업수행자 명단 등을 첨부하여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 중간보고

- 용역 수행자는 수요기관 요청 시 과업 수행 중간에 진행 상황을 1회 이상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

- 최종보고서 원고를 계약만료일 7일 이전에 기본사회위원회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 원고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 만료일까지 관련 자료를 포함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연구 결과에 대해 관계기관에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 시, 보고서와는 별도로 연구 결과물을 전자파일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서 제출

- 최종 보고서는 용역 발주처와 수시 협의를 통해 보완·정리된 사항을 제출(A4 규격 인쇄본 10부, 전자 파일(hwp, pdf))해야 하며, 본 연구 결과의 보존과 확산·활용의 관점에서 연구과정에서 입수조사된 내용을 첨부하여 인쇄·제출해야 한다.

<과업 추진 일정(안)>

번호	세부 연구 내용	추진 일정(4개월)											
		1			2			3			4		
1	착수보고 및 자료조사												
2	과업 연구 및 수행												
3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서 제출												

* 추진 일정은 협의에 따라 변동 가능

- 본 과업 수행자의 대표자는 자필로 보안각서를 서명·작성하고 제안사 대표의 확인을 거친 후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기본사회위원회 담당 부서의 확인을 받고 보안각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작업장소는 과업수행을 위한 곳으로 한정하며, 출입자 통제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모든 관계서류, 자료, 성과품 등은 보관함을 구분하여 책임자를 지정하고, 회의자료 등을 위해 배포한 자료는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하며,
 - 불량·파지 등의 소각 및 파기대책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으로 생산되는 자료는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되며, 기본사회위원회 담당 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 본 과업 관련으로 인쇄를 할 경우 관련자에게 보안 사항을 알려주고 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납품 물량 추가 발행 시 기본사회위원회 담당 부서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으로 인한 자료 등 취득한 내용을 임의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보상을 해야 한다.
- 과업의 내용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작성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직원에게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성과품을 과업 완료시에 발주기관에 전량 납품 하도록 하고, 성과품을 추가 제작, 인쇄 또는 별도 보관하지 못한다.
-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붙임1>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번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202 . . .
	입찰건명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②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위원회에서 정한 용역 입찰유의사항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인감증명 1부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각 1부 202 . . . 신청인 ②인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 귀하				

- ※ 업체명은 법인의 상호 또는 개인의 성명을 기재
- ※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만 기입
- ※ 신청인은 업체명 및 대표자명 기재후 법인인감 날인

제 안 서

공고번호				
과 제 명				
주 관 연구기관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주관연구 책임자	소속 및 부서	연락처	성명(직위)	연락처
연구 참여자	연구원 (연구책임자 제외)	명	연구 보조원	명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개월)			
참여기관	기관명	연구책임자(연락처)		대표자
첨부와 같이 정책연구용역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총괄책임자: (인) 주관기관장: (인)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	제안서 세부내용			

<첨부>

제안서 내용

- A4 용지로 하되, 분량 및 형식에 제한은 없음
-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2. 연구내용 및 방법·범위
 3. 연구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방안
 4. 기간별 추진일정
 5.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등
 6. 해당 기관의 동 분야 연구실적(최근 2년내)
 7. 참여연구원 현황(이력·경험 포함) 및 역할

<붙임3> 가격입찰서

가 격 입 찰 서

사 업 명	
발 주 기 관	
제 안 단 체	
용 역 기 간	~ ()개월
제 안 금 액	일금 (₩)

구 분	금 액	비 고
수 행 용 역 비		부가세 포함
기타 재료비 등		부가세 포함
합 계		부가세 포함
제 안 금 액		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2026년 월 일

주관사업자 : 직인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 귀하

<붙임4>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단위: 원)

비 목 구 분	금 액	구성비	산출내역
1. 인건비 소계			
○ 책임연구원 ○ 연구원 ○ 연구보조원 ○ 보조원			
2. 경비 소계			
○ 여비 ○ 유인물비 ○ 전산처리비 ○ 연구자료비 ○ 회의비 ○ 임차료 ○ 교통통신비			
3. 일반관리비(%)			
4. 부가가치세(%)			
합 계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중 학술연구용역 관련규정(원가계산)을 적용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인건비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34호, '26.1.2.) 별표5(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 '26년 기준에 예규 제26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을 적용·산출(아래 표 참조)

※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26년)

등 급	월 임 금
책임연구원	월 3,783,728원
연구원	월 2,901,312원
연구보조원	월 1,939,429원
보조원	월 1,454,621원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 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상여금, 퇴직급여 충당금 적용·산출 금액

등 급	㉠기준단가 (투입율 50%)	㉡상여금 (㉠×400%÷12)	㉢퇴직급여 (㉠+㉡)÷12	㉠+㉡+㉢ 월인건비 (투입율 50%)	(㉠+㉡+㉢)×2 월인건비 (투입율 100%)
책임연구원	3,783,728	1,261,243	420,414	5,465,385	10,930,770
연구원	2,901,312	967,104	322,368	4,190,784	8,381,568
연구보조원	1,939,429	646,476	215,492	2,801,397	5,602,795
보조원	1,454,621	484,874	161,625	2,101,119	4,202,238

<붙임5> 제안사 일반 현황

제안사 일반 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 주요 연혁																																	
◎ 재무 현황(최근 3년간 자산, 자본, 부채 등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 공공기관(기타 공공기관)은 기재 불필요 (단위 : 백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2023년</th> <th>2024년</th> <th>2025년</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자산</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자본</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부채</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부채비율</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매출액</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비고	자산					자본					부채					부채비율					매출액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비고																													
자산																																	
자본																																	
부채																																	
부채비율																																	
매출액																																	

본 과업 연구진 총괄표

분 야	성명	생년월일	직급/ 직위	주요경력 (관련 분야)	학위 및 자격사항
책 임 연구원 (또는 특급 기술자)					
연구원 (또는 고급 기술자)					
연 구 보조원 (또는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주) 1.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할 것.

2. 연구진은 과업에 참여하는 보유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외부 참여자는 제외)

※ 필수제출서류 : 자격증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제안서 제출기관에 소속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연구진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전공			해당분야 경력		년 월	
본 용역 참여 임무				학위 또는 자격사항			
주 요 경 력							
용 역 명		참여 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기관 금액	
		~					
		~					
		~					
		~					

-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 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 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자료 등
- ※ 상기 사업에 해당 되는 투입인력 등급으로 작성하며, 등급 기준은 각 해당 기준에서 참고

용역(연구) 수행실적

(금액단위 : 백만원)

건 명	개 요	용역금액	발주처	계약일	착수일	준공일	비고

-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준공한 책임연구원의 관련연구 보고서 및 논문실적을 일자 순으로 기재 (학위연구논문 제외)
2. 하도급 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3. 공동도급의 경우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서의 지분만을 기재
4. 계약서,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 첨부

관련연구분야 인력보유현황

분 야	성 명	생년월일	직 위	주요경력(관련분야)	학 위 또는 자 격 사 항
		123456-1			

주) 연구인력 평가를 위한 자료로 제안자의 관련 전문인력 보유현황

확 약 서

1. 공고번호 :

2. 입찰건명 :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단체명 :

소재지 :

주민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 귀하

보안서약서

1. 서약자

- 회사명 :
- 소재지 :
- 직책(직위) :
- 성명 :

2. 내용

本人(本社)은 기본사회위원회에서 발주하는 『기본사회 관점의 일자리 정책 추진방향 연구』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본 사업에서 습득한 **기본사회위원회의 제반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안서 제출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공개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本人 및 本社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위 서약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 귀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 입찰개요

○ 공고번호 :

○ 입찰일자 :

○ 과 제 명 :

2. 입찰보증금

○ 계약(예정)금액 : 일금 원정(₩ 원)

○ 계약보증금(상당액) : 일금 원정(W 원)

- 보증금율 : %

- 보증금 납부방법 :

○ 납부면제

- 사유 :

본인은 상기 용역을 입찰함에 있어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위 보증금 납부사례가 발생할 경우(낙찰후 계약미체결 등) 즉시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소 :

기관명 :

대 표 : (인)

기본사회위원회 귀중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기본사회 관점의 일자리 정책 추진방향 연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기본사회 위원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기본사회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기본사회위원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기본사회위원회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기본사회위원회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기본사회위원회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기본사회위원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 귀하